



- 이 가입자 설비가 준수해야 할 요건은 장비규정이 자세히 정하고 있으며(시설및장비규정 제9항),
- 가입자 소프트웨어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지원을 받아 정보통신부 장관이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심사를 통과한 가입자 소프트웨어는 **공인인증기관이 코드사인하여 제공해야** 하며, 그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를 할 의무도 공인인증기관에게 있으며(인증업무지침 제24조 제4항 제5항, 시설및장비규정 9.6),
- 인증업무지침 제24조 제1항은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기관 지정 시 심사를 받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같은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자신은 공인인증서 파일만 발급하면 되고, 가입자 설비(“이용프로그램”)의 제공의무는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4. 또한 피신청인이 발급한 “인증서(certificate)”는 범용성이 있으나, 그와 쌍을 이루는 “개인키(private key)”는 범용성이 없습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급한 개인키는 SEED알고리즘으로 암호화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제공되지 않으면 어떠한 운영체제/웹브라우저도 피신청인이 발급한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5. 피신청인은 같은 답변서 제6면 각주9, 제7면에서 은행 등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만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제2항 제3호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그 조항의 일부만을 인용할 뿐, 단서를 누락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강조는 신청인이 추가):

이용자PC에서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접속 시 우선적으로 이용자PC에 개인용 침입차단시스템, 키보드해킹방지 프로그램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

것(다만, 고객의 책임으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 해제 가능)

6. 이 규정에서 말하는 “보안프로그램”(방화벽, 키보드해킹방지 프로그램)은 웹브라우저와는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해당 규정자체도 이미 고객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해제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거절하면 아예 인터넷 뱅킹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은 그러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를 이용자가 거절하더라도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적법합니다.
7. 은행의 전산환경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만 전용화되도록 법령으로 강제되어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2007.5.5.

신청인      김 기 창